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80호
------	------

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경제문화국장
제출연월일	2023. 5. 16.

예산실장 심사필

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80호
----------	------

제출연월일 : 2023. 5. 16.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1. 제안이유

논산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셔틀버스의 운영 및 노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 다. 셔틀버스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감사실-4204(2023.4.24.)호]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복지정책과-12111(2023.4.12.)호]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예산실-4472(2023.4.12.)호]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4. 11. ~ 2023. 5. 1.(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관광진흥과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역축제장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논산딸기축제, 강경젓갈이 상월고구마와 춤을 추다 축제, 강경문화재 야행, 논산시민의 날 축제, 연산대추축제, 양촌꽃감축제와 논산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장 등을 말한다.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 운영 시, 시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으로 제한한다.

제6조(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노선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문화예술과장	서 승 권
	공연축제팀장	노 원 중
	담 당 자	최 효 원 (746-5664)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세출 :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비
 - 사무관리비

나. 추계결과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천원)
계		157,500
사무관리비	【셔틀버스 임차료】 - 논산딸기축제 $650\text{천원} \times 5\text{일} \times 20\text{대} = 65,000,000\text{원}$ - 강경젓갈이 상월고구마와 춤을 추다 $650\text{천원} \times 5\text{일} \times 20\text{대} = 65,000,000\text{원}$ - 강경문화재 야행 $650\text{천원} \times 3\text{일} \times 20\text{대} = 21,000,000\text{원}$ - 논산시민의 날 축제 $650\text{천원} \times 1\text{일} \times 10\text{대} = 6,500,000\text{원}$	157,500

※ 재원조달방안 : 시비

3.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서 승 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57,500	157,500	157,500	157,500	157,500	787,500
시 비	157,500	157,500	157,500	157,500	157,500	787,500
세 출	157,500	157,500	157,500	157,500	157,500	787,500
사무관리비	157,500	157,500	157,500	157,500	157,500	787,500
재원 조달	157,500	157,500	157,500	157,500	157,500	787,5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7,500	157,500	157,500	157,500	787,500
	지방세	157,500	157,500	157,500	157,500	787,500
	세외수입					
	공모사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축제장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타시군 조례 현황**

시·군명	조 례 명	비 고
이천시	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19.10.07. 제정
아산시	아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19.03.15. 제정
부여군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18.04.18. 제정
예산군	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18.03.30. 제정
계룡시	계룡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17.07.10. 제정
익산시	익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16.07.15. 제정
진주시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2015.07.13. 제정
전주시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15.04.15. 제정
동래구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2015.07.05. 개정
시흥시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05.08. 제정